

의안번호	2213751
의 퇴 인	최기상의원
회 답 일	2025.11.6.
추계번호	25E57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연령 조정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8세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경우 재정수입 증가는 다음과 같음
- 재정수입 증가는 2027년 768억원, 2031년 4,271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1조 2,350억원(연평균 2,470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자녀세액공제 확대 (안 제59조의2①)	768	1,572	2,419	3,319	4,271	12,350	2,47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녀 연령 조정 - (현행)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인 자 - (개정안)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인 자 * 부칙에서 공제대상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에 대하여 규정 - 과세기간이 2026.1.1.~2026.12.31.까지인 경우: 9세 이상 - 과세기간이 2027.1.1.~2027.12.31.까지인 경우: 10세 이상 - 과세기간이 2028.1.1.~2028.12.31.까지인 경우: 11세 이상 - 과세기간이 2029.1.1.~2029.12.31.까지인 경우: 12세 이상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2제1항 (자녀세액공제)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시행하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7년부터 세수효과 발생(징수 기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이 2026년 9세 이상에서 2030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매년 전체 공제대상 연령 인구 대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의 인구 비율만큼 공제규모가 점차 축소 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공제대상의 축소로 소득세수의 증가가 예상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감면 실적

- 2023년 근로소득자(결정세액 있는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각각 4,952억원, 3,351억원임
 - 근로소득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이후 4년(2019~2023년) 간 연평균 1.2% 감소

- 제도 변화가 없었던 2019~2022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 증가했으나, 2023년부터 대상자가 축소(7세 이상→8세 이상)됨에 따라 2023년 세액공제 규모는 전년 대비 8.1% 감소
-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2019년 이후 4년(2019~2023년)간 연평균 3.4% 증가
 - 제도 변화가 없었던 2019~2022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2.1% 증가했으며, 2023년은 대상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5% 증가

[표 2]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 근로소득세,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연평균
적용인원	2,115	2,124	2,153	2,207	2,057	2,207
(증가율)	(-20.3%)	(0.4%)	(1.4%)	(2.5%)	(-6.8%)	(-0.7%)
세액공제금액	5,200	5,185	5,259	5,386	4,952	5,169
(증가율)	(-26.4%)	(-0.3%)	(1.4%)	(2.4%)	(-8.1%)	(-1.2%)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이: 종합소득세, 귀속연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연평균
적용인원	1,168	1,117	1,213	1,240	1,351	1,190
(증가율)	(-15.5%)	(-4.4%)	(8.7%)	(2.2%)	(9.0%)	(3.7%)
세액공제금액	2,932	2,802	3,034	3,118	3,351	2,985
(증가율)	(-21.7%)	(-4.5%)	(8.3%)	(2.8%)	(7.5%)	(3.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현행(2025년) 기준의 자녀세액공제 규모 추정 후, 매년 공제대상 자녀 연령 조정으로 공제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현행(2025년) 기준의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 귀속 세액공제금액 실적치(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¹⁾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자녀수별 기본공제금액(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을 반영하여 추정
 - － 이후 기간은 제도변화가 없었던 최근 3년(2019~2022년)간 연평균 증가율(근로소득세 1.2%, 종합소득세 2.1%)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 기준 자녀세액공제 규모는 공제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상에서 2026년 9세 이상, 2030년 13세 이상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조정되므로, 각 연도마다 전체 공제대상 연령 인구 대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의 인구 비율만큼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 매년 과세대상자 확대에 따른 공제규모 증가율(근로소득세 1.2%, 종합소득세 2.1%) 및 공제대상 자녀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공제규모 축소를 반영하여 추계
 - － 2026년의 경우 8~20세 이상 인구에서 8세가 차지하는 비율(2026년 6.1%)만큼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
 - － 2027년은 9~20세 이상 인구에서 9세가 차지하는 비율(2027년 6.5%)만큼 전년 대비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
 - － 2028년은 10~20세 이상 인구에서 10세가 차지하는 비율(2028년 7.2%)만큼 전년대비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
 - － 2029년은 11~20세 이상 인구에서 11세가 차지하는 비율(2029년 8.0%)만큼 전년대비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
 - － 2030년은 12~20세 이상 인구에서 12세가 차지하는 비율(2030년 8.9%)만큼 전년대비 공제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가정
- 근로소득세의 경우 결정세액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만 세수효과 추계
 - － 현행 결정세액이 없는 자 중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로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결정세액이 없는 자가 결정세액이 0 이상이 되기 위해 증가해야 하는 세액의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²⁾
 -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 추계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중복자) 제외

1) 2023년 귀속기준 소득규모별·자녀수별(1명, 2명, 3명 이상) 자녀세액공제 적용 인원 및 공제금액 자료(국세청 제출자료) 활용

2) 자녀세액공제 적용자 중 결정세액 없는 자는 제도 변화가 없었던 최근 3년(2019~2022년)간 연평균 10.8% 감소, 2023년 자녀 연령기준이 7세 이상에서 8세 이상으로 대상자가 축소되었을 때는 제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폭이 오히려 축소(-5.5%)되어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움

(3) 추계 결과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7~2031년 5년 동안 1조 2,3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근로소득세는 6,577억원, 종합소득세는 5,773억원 증가 예상

[표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연령 조정 시 세수효과: 2027~2031년 (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근로소득세	413	843	1,292	1,766	2,263	6,577	1,315
종합소득세	354	729	1,127	1,554	2,008	5,773	1,155
합계	768	1,572	2,419	3,319	4,271	12,350	2,47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